제334회 임 시 회
2022. 1. 25.(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과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수업, 학습결손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기초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4조는 도내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기초학력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기초학력보장위원회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모든 학생이 적절한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